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나36232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임남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변론 종결 2020. 3. 25.

판결 선고 2020. 4. 8.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가단767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363,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709,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9. 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 2018. 3. 9.부터 2021.3. 9.까지로 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포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가구공장(이하 '이 사건 가구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다. 2018. 11. 7. 21:48경 피고가 운영하는 가구공장 건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인접해 있던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고는 2019. 2. 20.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D에게 보험금 96,727,84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이 사건 가구공장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96,727,848원을 지급하여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70%에 해당하는 67,709,4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최초 발화지점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구공장 밖이고 화재원인이 '원인불상'으로, 피고의 관리 소홀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97다27022 판결 참조).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최초 원인불상으로 조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제1항)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구공장 가동 건물 내부의 CCTV 영상에는 위 건물내부에 설치된 재단기 아래에서 작은 화염이 최초로 발생되었고 이후 화염이 커지는 장면이 촬영된 점, ② 이후 이 사건 가구공장의 건물 벽면과 천장으로 불길이 번진 후인접한 이 사건 건물까지 연소가 확대된 점, ③ 이를 기초로 관할소방서인 포천소방서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화재 원인은 "재단기에 연결된 전기배선에서의 단락현으로 인하여 전선피복에 착화 및 발화된 것"으로 본 점, ④ 이 사건 화재 발생 시간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구공장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로 제3자에 의한 실화나 방화의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가구공장의 점유자인 피고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가구공장의 경우 인접한 이 사건 건물에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3 그 밖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의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구상금 48,363,924원(= 96,727,848원 × 5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광, 판사 박상수, 판사 정은영